

건설업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

(120억원 미만 건설현장)

※ 동 실시규정(예시)은 사업장(현장)사정에 맞춰 수정 사용이 가능합니다. 특히, 동 규정은 원청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맞추어 작성되어 있으므로, 하청에서 원청과 별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절히 변형하여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.

업체명 (현장명)		위험성평가 실시규정 (최초-상시)	담당자 (공사담당자)	검토자 (위험성평가담당자)	근로자대표 (작업반장 등)	승인자 (현장소장)
작성일자 (개정일자)						
목적	•근로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사망사고 제로 실현		방법	• 위험수준 3등급 판단법(상·중·하)		
조직 및 역할			안전보건관리 책임자(현장소장)	• 위험성평가 총괄 •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·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		
			위험성평가 담당자	•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•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•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•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•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		
			공사담당자	•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·위험요인 발굴 • 유해·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•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•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•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·TBM 전파		
			공중별 협력업체 소장	• 작업관련 위험성평가·TBM 참여 • 평시 위험 제언, 아차사고 제보 참여 •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		
			일반 근로자			

평가절차 및 방법	① 사전준비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예정 공정표(원·하청 공사담당자 작성) 확인 및 공중(단위작업) 분류 2 동종 유사업종 재해, 아차사고 사례, 안전보건정보 수집 » 사전에 주로 살피볼 유해·위험요인을 미리 검토 												
	② 유해·위험요인 파악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노사 합동 사업장 순회점검, 2 근로자 제안제도(제안함·TBM시 건의 등), 3 아차사고 제보사례, 4 안전보건공단 공중별 사망사고 핵심위험요인(SIF)표 등을 활용하여 예정 공정표에 따른 공중별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 » 사전준비 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유해·위험요인을 추가적으로 발굴 												
	③ 위험성 결정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전체 위험성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관리할 유해·위험요인을 선정 2 근로자의 경험과 재해사례 등을 반영하여 위험성 결정 3 '상'과 '중'등급은 중점관리, '하'등급은 일상관리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위험성 수준</th> <th>판단 기준</th> <th>허용 가능여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상</td> <td>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</td> <td>허용</td> </tr> <tr> <td>중</td> <td>사고 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(아차사고 포함)</td> <td>불가능</td> </tr> <tr> <td>하</td> <td>작업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</td> <td>허용가능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위험성 수준	판단 기준	허용 가능여부	상	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	허용	중	사고 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(아차사고 포함)	불가능	하	작업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	허용가능
	위험성 수준	판단 기준	허용 가능여부											
	상	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	허용											
	중	사고 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(아차사고 포함)	불가능											
하	작업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	허용가능												
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실천가능한 위험 감소대책을 수립하고, 누가 언제까지 실행할지 계획 수립 ①-1. '상'등급 대책: 공법변경 → 작업변경 → 안전시설물 → 개인보호구* 순 ①-2. '중'등급 대책: 관리자 배치(신호수 등) → 위험저감 교육 등 ①-3. '하'등급: 현재의 위험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관리 수행 * 개인보호구는 위험성 감소의 근본적 대책은 아니며, 보충적으로 활용 													
⑤ 평가결과 공유·교육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[TBM] 일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 위험성평가 결과와 근로자 준수사항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을 철저히 공유 2 [공유] 현장 출입구에 설치된 안전보건 현황판에 매일 위험성평가 결과 게시(SNS 공유 병행 가능) 3 [교육] 매일 정기안전보건교육, 수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													
⑥ 감소대책 이행·확인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공중별 공사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시 결과를 확인하고 공유 2 주 단위 원·하청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													

평가별 시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(최초평가) 공사 실착공 후 1개월 이내 착수 ▶(상시평가) 최초평가 후 매월 1회 이상 주기적 실시 <p>* 최초·주기적 위험성평가 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이나 공정 변화로 인해 새로운 유해·위험요인이 생기거나 유해·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변동되었다면,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·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</p>
-----------	--

실시 주기	참여자	세부 내용
월(月) 1회 매월 ○ 매주 △요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» 현장소장 » 평가담당자 » 공사담당자 » 협력업체소장 » 현장근로자 	<p>위험성평가 실시(위험파악·대책마련 절차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(노·사합동 순회점검) 노·사 합동 순회점검을 통해 현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확인한다. 이때, 월간 작업일정과 관련된 신규/변동 유해·위험요인에 유의한다. » 순회점검 이전에 아차사고 사례 및 근로자 제안을 취합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즉시 대응하고, 순회점검 시 중점 점검한다. 2 (아차사고 검토)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아차사고 사례를 검토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한다. 3 (근로자 제안) 근로자들의 유해·위험요인 및 위험상황 제안제도를 활용하여 지난 한 달 제보받은 사항들을 점검하고,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한다. 4 (예정공정표 활용) 정해진 위험성평가 주기 내에 예정된 작업공정 확인 <p>▶ 파악한 유해·위험요인별로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 및 이행계획을 마련한다.</p>
주(週) 매주 □ 요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» 현장소장 » 평가담당자 » 공사담당자 » 협력업체소장 	<p>위험성평가 결과 논의·공유, 이행상황 점검(원·하청 합동 안전 점검회의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향후 1주간 공정·작업별 핵심 유해·위험요인과 근로자들의 주의·준수사항에 대해 공유한다. • 지난 1주간 유해·위험요인별 위험성 변동이 없는지 여부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현황을 확인한다. • 신규/변동 유해·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위험성 결정을 실시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한다.
일(日) 매일 작업 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» 현장소장 » 평가담당자 » 공사담당자 » 협력업체소장 » 현장근로자 	<p>작업 전 안전점검회의(TBM) 활용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 작업일마다 TBM을 통해 공정·작업별 핵심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주의·준수사항을 공유/전파한다. • 위험성평가담당자는 사전에 전체 TBM 담당자에게 예정된 작업별 주요 유해·위험요인 및 주의·준수사항 등 TBM 내용을 전파한다.

기록·보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험성평가 기록은 별첨 양식을 출력하여 기록하며 매월 안전보건관리책임자(현장소장)의 승인을 받는다. • 승인된 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 현장의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라 공사 종료 후 3년 간 보관한다.
-------	--

※ 위 실시규정은 누리집에서 「위험성평가 실시규정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안전보건공단 누리집 ⇨ 사업소개 ⇨ 건설안전 ⇨ 건설안전자료실)